

#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 재 결 서

사 건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등』  
처분 취소 청구  
사 건 번 호 2019-134호  
청 구 인 ○○○  
피 청 구 인 인천○○중학교장  
재 결 일 자 2019. 11. 11.

## 주 문

피청구인이 2019. 8.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등』 처분을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부가적 특별교육이수 학생 4시간, 보호자 2시간』으로 변경하여 처분한다.

##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19. 8.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등』 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 I.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5월경 □□□□학원에서 청구인이 ●●●(피해학생)의 귀에 ‘딱’ 소리를 내어 이명 증상이 발생하게 하였고, ●●●의 특정 신체 부위(성기)를 가격하여 멍이 들게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9. 7. 3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라고 함)를 개최하여 2019. 8. 7. 청구인에게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부가적 특별교육이수 학생 4시간, 보호자 2시간」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을 제기하였다.

##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청구인은 피해학생 ●●●의 심판의 △△△에 대한 학폭위사건 조사를 받던 과정에서 청구인이 증인으로서 피해학생 ●●●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반감때문에 그에 대한 보복으로 청구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것으로 피해학생 ●●●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피청구인의 처분은 피해학생 ●●●의 진술과 결과론에만 치우쳐 공정하게 조사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의 초기조사과정에서 마치 잘못을 인정하는 듯이 말한 것은 장난치던 과정에서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의미였을 뿐, 그러한 행위가 학교폭력인 것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었고, 이 사건 청구인의 행위는 친구들간에 장난을 친 것에 불과하기에 학교폭력이라 할 수 없으며, 학폭위 개최과정에서 통지를 받지 못해 학폭위의 직전까지도 단순한 참고인인줄 알았기 때문에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하여 그로 인해 청구인의 진술권, 자료제출권등 방어권이 침해되었기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 및 보호자를 학폭위에 참석하게 하여 충분한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청구인측이 이미 학폭위이전부터 학원에 직접 방문하여 학원생을 대상으로 진술을 받고 나아가 그 진술내용을 녹취록으로 작성까지 해서 보관하다가 이 사건 학폭위당시 제출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을 2회에 걸쳐 조사하여 청구인의 진술중 피해자의 피해진술과 일치되는 인정사실에 대해서만 사실인정을 하고 그에 따라 학교폭력사건 처리지침에 의거 정당한 처분을 한 것이기에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 Ⅳ.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2. 판단

가. 학교폭력예방방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와 답변서, 청구인과 상대학생의 진

술서, 목격학생 확인서 등 증거자료, 청구인 및 피청구인 대리인에 대한 구술심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나. 청구인이 학폭위에서의 방어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기에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조사과정 및 사실확인서 진술기재, 학폭위에의 보호자 참여사실 및 진술내용, 학폭위에서의 제출자료, 자료사전준비정도, 학폭위 이후 제출한 자료 등 제반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학폭위과정에서 청구인의 방어권, 진술권이 침해되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다. 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판단컨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먼저 똑같은 장난을 치기에 이에 대응하여 똑같은 행위를 한 것일 뿐이고, 친구간에 장난을 친 것일 뿐이기에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설령 청구인의 주장처럼 피해학생이 먼저 같은 행위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귀에 대고 딱소리를 내는 행위는 자칫 고막을 파열시킬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이고, 실제로 피해학생의 귀에 한동안 이명이 생긴 점으로 볼 때 장난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또한 장난치는 과정에서 급소를 가격한 행위 역시 피해학생의 몸에 멍이 든 결과가 초래된 점에 비추어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는 어려워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다만, 처분의 정도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피해학생도 청구인에게 귀에 딱소리를 내는 등 상호간에 장난치던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점, 평소에도 상호간에 심한 장난을 자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볼 때 피해자에게도 결과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폭력행위의 동기나 태양, 가해행위에 대한 반성의 정도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폭력성이 심각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간의 관계 및 친밀정도, 피해정도를 감안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다소 무

거위 보이기에, 이 사건 처분중 학교에서의 봉사활동 6시간을 제외하기로 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부가적 특별교육이수 학생 4시간, 보호자 2시간을 명한다.

##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위와 같이 일부 이유가 있기에 주문과 같이 변경하여 재결한다.